코로Lh9」 관련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한시적 인정 유예

「<mark>코로나19」 관련 감염병 발생</mark>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. 사업장의 보험료율 인하 혜택 유지를 위해 『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』인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실시합니다.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 유예 란?

'20년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(인정)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를 적용하는 한시적 방안

예시 인정기간이 '19. 4. 1. ~ '20. 3. 31. 인 사업장의 경우



"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"

추후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재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
